

부산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2나5523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2나55231 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19가단318603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원대희

변론종결 2023. 5. 26.

판결선고 2023. 8. 11.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19가단318603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지분에 관하여 2019. 3. 4.1)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57,466,594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466,594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1지분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9. 3. 4.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부산지방법원 중부산등기소 2019. 3. 15. 접수 제637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최지영, 판사 이재희, 판사 정성호

별지

한 날은 2019.3. 4.로 보이므로 정정한다.